



제41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 공시 제도 도입 등 〉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917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후공시 추가	3
2.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3. 12. 14.
3. 회 부 일 : 2023.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규명하도록 하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9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후공시 추가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u>

현행	개정안
<신설>	로 정한다) 6.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신설>	7.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사업보고서는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금융용어사전, 2024.2.6. 조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사업, 소유관계, 재무적 사항 등으로³⁾, 그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 가. 주권
-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던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재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 2. 회사의 개요
-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4. 주주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아니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⁴⁾

□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2년 3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공시 도입을 준비 중이며,⁵⁾

○ EU는 상장·비상장 대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를 2025년(2024회계연도)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⁶⁾

○ 또한, IFRS 재단⁷⁾ 산하의 ISSB⁸⁾는 2022년 3월 일반 및 기후분야의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중요사항 허위 기재·미기재 시 「자본시장법」상 제재는 다음과 같음.

- 행정조치(§164):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주의 등
- 손해배상책임(§162):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보고서 관련 제출인·이사·작성자·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사 등
- 과징금(§429): 전년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최대 20억원) 내에서 부과
- 형사처벌(§444, §446):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제출)

5) 홍지연,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2.5.

6)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5.

7)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8)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021년 11월 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⁹⁾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¹⁰⁾ 및 S2(기후)¹¹⁾ 최종안을 발표하였음.¹²⁾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지속가능보고서¹³⁾(한국 거래소 공시)를 통해 기후를 포함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 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¹⁴⁾한 바 있으며, 현재 공시 기준, 대상기업, 도입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음.

- 그 외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¹⁵⁾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¹⁶⁾에 따른 관리업체 및 인증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지정기업은 환경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하며,

9)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용어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를 의미함.

10)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1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 S1과 함께 적용되도록 고안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IS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2023.12.26.

13) 환경 관련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1.14.

1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한다.)

카.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에 대한 인증에 관한 사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및 녹색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16)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됨.

-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17)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함.

[표1]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정보공시 현황

구분	주요내용
사업보고서 공시	○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녹색경영 관련 사항 ○ 사업 관련 환경물질 배출,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 준수사항, 환경개선설비 관련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 <u>녹색경영정보</u>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인증·확인에 관한 사항, 관리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등 제재조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u>지속가능경영보고서</u> 관련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개별법상 공시	○ <u>환경정보공개제도</u>에 따른 공시: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및 온실가스·환경오염 관련 관리활동(저감투자, 기술도입)과 관련 성과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법규 위반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협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후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여 적응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과 EU 등의 기후공시 강화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국가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공시규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예정¹⁸⁾이라는 점, 향후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¹⁹⁾에 따른 소비자 소송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공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의 공시 역량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기후공시 의무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²⁰⁾에게 기후공시 의무를

18) 한국거래소, “글로벌 ESG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2023.5.

19)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출처: 환경 용어사전)

20) ①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부여하고 있고, 공시대상 정보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²¹⁾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기업과 정보 범위의 적정성, 해외의 동향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외 공시제도 도입 및 이행현황과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기후를 포함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시 제도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까지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초기단계라는 점²²⁾, 국내의 경우도 ESG 공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단계²³⁾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해관계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역시 국내외 공시제도의 도입·이행 현황 등을 지켜본 후 법정공시 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1) 다만, 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단기·중기·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2) 미국의 경우 2022년 3월 기후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했으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ISSB에서 2023년 6월 말에 확정된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각국에서 검토 중인 상황임..

23)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 또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의무 대상을 상장법인 전체로 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공시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정안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에 기후공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그린 워싱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소송, 불성실공시 등 기업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²⁴⁾이 과도하고 정보의 범위²⁵⁾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① 의무공시 규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후 정보에 대한 공시는 관련 공시기준을 정립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이후, 정보비대칭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내 의무공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② 정보의 공시채널로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단계별 의무공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한 의무화가 적절하고,²⁶⁾ 「자본시장법」상 사업

24)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온실가스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무 대상은 자산 일정규모 이상 등으로 한정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임.

25) 간접배출량(Scope3) 공시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함.

26) 다만, ‘기후’ 관련 공시기준 외의 환경 및 사회 관련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정보의 공시기준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기후 관련 중요 정보를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으로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임.

보고서 내 의무공시 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허위 또는 부실기재 관련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사업보고서 내 공시 의무화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²⁷⁾

□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²⁸⁾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7) 국회입법조사처,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안건 주주총회 상정 의무화 규제 검토」, 2024.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852호, 2020.8.10., ②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887호, 2021.12.14., ③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36호, 2022.2.28., ④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133호, 2022.6.24.

[표2] 개정안별 사업보고서 ESG 공시사항 비교

민형배의원안	유의동의원안	이장섭의원안	이용우의원안
○ 공정거래, 금융 및 조세, 노동, 환경, 인권, 소비자, 안전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 금융 및 조세, 기후·환경,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 사업활동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여지가 있는 환경오염 현황과 이를 개선·방지하기 위한 경영 계획 및 환경관련 규제 준수 비용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지출 비용 등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관련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 내부신고제도와 내부 신고자 보호대책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실행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경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평균 보수를 임원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보수로 나눈 비율			
○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전체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비율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에 대한 주주총회 상정

- 개정안은 대응계획과 감축목표를 회사의 이익과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9조의2(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① 이사회는 제159조제2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회사의 이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현행	개정안
	<u>직후에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u> <u>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59조제2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u> <u>④ 주권상장법인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종속회사 중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 작성한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u> <u>⑤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되, 해당 결의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이사회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부결한 경우 이사회는 대응계획 및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 “Say on Climate”(이하 “세이온클라이밋”)은 회사가 기후 대응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²⁹⁾

○ 최근 유럽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자발적 또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세이온클라이밋을 시행하는 사례³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2년 스위스는 비재무적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 프랑스에서도 세이온클라이밋의 입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음.³¹⁾³²⁾

- 또한, 실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이온클라이밋을 주주총회에 직접 상정한 사례로 영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 조사 결과 총 55개 기업 사례가 관측되었음.³³⁾

29) 노종화·이승희, “Say on Climate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대, 2023. 9.

30) 스페인 아에나(AENA)사가 세계 최초로 주주제안을 통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31) 2023년 7월 개정안이 하원(국민의회)을 통과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상원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됨.

32) 국회입법조사처

33) 노종화·이승희, “Say on Climate 현황과 국내 도입 방안”,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대, 2023. 9.

[표3] 세이온클라이밋 시행 사례

구분	사례
이사회 의 자발적 시행	○ 영국 전력 및 가스회사 네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plc) - 2021년 정기주총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권고적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사의 기후전략과 이행상황을 차기 주총부터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 - 2022년 정기주총에서 계획·조치 등을 포함한 기후 전환 계획을 상정(권고적 표결) - 2023년에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미상정 ○ 캐나다 국영철도회사(Canadian National Railway Company) - 2021년 정기주총에서 회사의 기후 행동 계획을 상정(권고적 표결) - 이후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행현황과 전략 등을 보고 후 권고적 표결
정관을 통한 시행	○ 스페인 공항공사 아에나(Aena) - 2020년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기후전략, 기후전환계획, 기후전환보고서 상정(권고적 표결) 등 세이온클라이밋을 정관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

(자료: 경제개혁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은 기후 대응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에 대한 이행현황의 법적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여 세이온클라이밋을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활동과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상법」 제361조³⁴⁾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안건인 대응계획·감축목표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34)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 제159조의2제5항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주권상장법 인이나 이사회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상법」의 체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되면 전체 주주 및 회사를 구속한다는 점³⁵⁾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상법」 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³⁶⁾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위원회는 ① 세이온클라이밋이 외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주주제안을 통해 일부 기업만이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 ②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자들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반대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35) 송옥렬, 「상법강의」, 제12판, 2022.

36) 「상법」 개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588호, 2022.1.26.)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④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견, ③ 프랑스의 경우에도 상원 논의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 법무부는 주주총회 결의는 주요한 의사결정으로써 회사를 구속하고 이사회는 결의내용 집행의무를 부담하므로 결의사항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개정안은 「상법」 체계와 모순되고, 그 의미가 모호하며,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 제안 가결 또는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세이온클라이밋 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권고적 표결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이 아닌 간접규제에 해당하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적 주주제안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향후 처리 경과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³⁷⁾

문 의 처
02)6788-5111

37) 국회입법조사처, 「기후공시 및 기후 관련 안건 주주총회 상정 의무화 규제 검토」, 2024.2.